

한경훈 / 4월 / 기초GS Plus / 9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7035	20	14	0	0	34	1	0.78%	6	129
556043	21	12	0	0	33	2	1.55%	6	
556399	19	14	0	0	33	2	1.55%	5	
556232	19	14	0	0	33	2	1.55%	6	
557746	19	13	0	0	32	5	3.88%	5	
556920	19	12	0	0	31	6	4.65%	6	
556401	18	12	0	0	30	7	5.43%	6	
556327	20	9	0	0	29	8	6.20%	6	
556769	17	12	0	0	29	8	6.20%	5	
556282	18	10	0	0	28	10	7.75%	5	
556448	18	10	0	0	28	10	7.75%	5	
556608	21	7	0	0	28	10	7.75%	5	
557147	16	12	0	0	28	10	7.75%	5	
557623	18	10	0	0	28	10	7.75%	5	
551362	16	11	0	0	27	15	11.63%	7	
554633	17	10	0	0	27	15	11.63%	6	
556203	14	13	0	0	27	15	11.63%	5	
556312	14	13	0	0	27	15	11.63%	6	
556344	16	11	0	0	27	15	11.63%	5	
556776	16	11	0	0	27	15	11.63%	5	
556515	18	9	0	0	27	15	11.63%	5	
556529	16	11	0	0	27	15	11.63%	5	
556958	14	13	0	0	27	15	11.63%	5	
556380	17.5	9	0	0	26.5	24	18.60%	5	
556236	17	9	0	0	26	25	19.38%	5	
556434	17	9	0	0	26	25	19.38%	5	
556948	16	10	0	0	26	25	19.38%	5	
559375	18	8	0	0	26	25	19.38%	6	
556541	14	12	0	0	26	25	19.38%	5	
556714	16	10	0	0	26	25	19.38%	6	
556836	16	10	0	0	26	25	19.38%	5	
556213	19	6.5	0	0	25.5	32	24.81%	5	
555790	14	11	0	0	25	33	25.58%	5	
556298	15	10	0	0	25	33	25.58%	5	
556302	19	6	0	0	25	33	25.58%	7	
556305	16	9	0	0	25	33	25.58%	5	
556383	14	10	0	0	24	37	28.68%	5	
556408	15	9	0	0	24	37	28.68%	5	
556423	15	9	0	0	24	37	28.68%	5	
556431	16	8	0	0	24	37	28.68%	5	
556626	16	8	0	0	24	37	28.68%	6	
556874	18	6	0	0	24	37	28.68%	5	
556969	12	12	0	0	24	37	28.68%	5	
557143	19	5	0	0	24	37	28.68%	5	
557130	17	7	0	0	24	37	28.68%	5	
556329	19	4	0	0	23	46	35.66%	6	
556358	18	5	0	0	23	46	35.66%	5	
556416	17	6	0	0	23	46	35.66%	5	
556699	19	4	0	0	23	46	35.66%	6	
557008	14	9	0	0	23	46	35.66%	5	
554737	14	8	0	0	22	51	39.53%	7	
556205	12	10	0	0	22	51	39.53%	5	
556272	13	9	0	0	22	51	39.53%	5	
556337	13	9	0	0	22	51	39.53%	5	
556397	14	8	0	0	22	51	39.53%	5	
556635	15	7	0	0	22	51	39.53%	5	
556260	15	7	0	0	22	51	39.53%	5	
556616	16	6	0	0	22	51	39.53%	5	
556886	16	6	0	0	22	51	39.53%	5	
556219	9	12	0	0	21	60	46.51%	4	
556377	13	8	0	0	21	60	46.51%	6	
554655	15	6	0	0	21	60	46.51%	6	

556609	13	8	0	0	21	60	46.51%	5
556833	14	7	0	0	21	60	46.51%	5
557062	16	5	0	0	21	60	46.51%	5
557127	13	8	0	0	21	60	46.51%	5
555788	17	3	0	0	20	67	51.94%	5
556214	9	11	0	0	20	67	51.94%	5
556324	16	4	0	0	20	67	51.94%	5
556376	16	4	0	0	20	67	51.94%	6
556415	17	3	0	0	20	67	51.94%	5
556436	16	4	0	0	20	67	51.94%	5
556360	19	0	0	0	19	73	56.59%	5
556393	13	6	0	0	19	73	56.59%	5
556429	17	2	0	0	19	73	56.59%	5
556483	12	7	0	0	19	73	56.59%	5
557214	16	3	0	0	19	73	56.59%	5
557673	17	2	0	0	19	73	56.59%	6
556728	19	0	0	0	19	73	56.59%	5
556747	19	0	0	0	19	73	56.59%	6
556777	14	5	0	0	19	73	56.59%	5
556409	17	1.5	0	0	18.5	82	63.57%	6
556479	14	4	0	0	18	83	64.34%	6
556509	16	2	0	0	18	83	64.34%	5
556633	12	6	0	0	18	83	64.34%	5
556646	18	0	0	0	18	83	64.34%	7
556412	14	3	0	0	17	87	67.44%	5
556432	17	0	0	0	17	87	67.44%	5
556627	17	0	0	0	17	87	67.44%	5
556842	8	9	0	0	17	87	67.44%	4
556926	17	0	0	0	17	87	67.44%	5
556443	14	3	0	0	17	87	67.44%	5
556707	13	4	0	0	17	87	67.44%	5
557269	17	0	0	0	17	87	67.44%	5
556588	13	3	0	0	16	95	73.64%	5
556809	12	4	0	0	16	95	73.64%	6
558082	14	2	0	0	16	95	73.64%	5
556336	15	1	0	0	16	95	73.64%	5
556881	12	4	0	0	16	95	73.64%	5
556071	14	1.5	0	0	15.5	100	77.52%	5
556382	14	1.5	0	0	15.5	100	77.52%	5
551340	9	6	0	0	15	102	79.07%	6
556171	8	7	0	0	15	102	79.07%	5
556790	11	4	0	0	15	102	79.07%	5
556917	15	0	0	0	15	102	79.07%	5
556357	10.5	4	0	0	14.5	106	82.17%	5
554589	10	4	0	0	14	107	82.95%	4
556301	14	0	0	0	14	107	82.95%	5
556189	13	0.5	0	0	13.5	109	84.50%	5
556373	13	0	0	0	13	110	85.27%	5
556899	13	0	0	0	13	110	85.27%	5
557179	10	2.5	0	0	12.5	112	86.82%	5
556411	12	0	0	0	12	113	87.60%	6
556414	12	0	0	0	12	113	87.60%	5
556430	10	2	0	0	12	113	87.60%	5
556499	10	2	0	0	12	113	87.60%	4
559611	12	0	0	0	12	113	87.60%	4
556151	11.5	0	0	0	11.5	118	91.47%	5
556575	11	0.5	0	0	11.5	118	91.47%	4
556388	11	0	0	0	11	120	93.02%	5
556322	10	0	0	0	10	121	93.80%	6
556782	10	0	0	0	10	121	93.80%	5
557152	8	2	0	0	10	121	93.80%	5
557085	9.5	0	0	0	9.5	124	96.12%	5
556396	9	0	0	0	9	125	96.90%	5
556421	8	1	0	0	9	125	96.90%	4
557533	8	1	0	0	9	125	96.90%	5

556956	6	0	0	0	6	128	99.22%	5
556311	4	1	0	0	5	129	100.00%	4

한경훈/4월/기초GS+/9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한경훈 상표법 기초GS+ 9회차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1은 34조1항20호에 대한 ‘장보고’ 판례를 타게팅하여 출제된 문제이기에 설문을 읽으시면서 해당 판례가 떠오르셨어야 합니다.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 해당 판례에서 실시된 판례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채점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1)의 경우 乙의 출원에 34조1항 20호 및 12호의 거절이유가 있는지, 심사관의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34조1항20호와 12호의 해당 여부를 통해 실체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은 잘해주셨지만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부분은 간결하게 또는 기재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묻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법 조문(法55조)을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4조1항20호를 검토할 때에는, 당연하게도 타겟된 판례(권리자 판단기준)를 충실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판례에 맞추어 사안 포섭도 동일한 논리로 내부 관계, 계약의 내용 등등에 맞추어 사안 포섭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또한 20호가 적용되기 위한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지 가볍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게 답안 인상에 더욱 좋았습니다.

(2) 설문 2

설문(2)의 경우 설문(1)과 별도인 문제로, 乙의 별도 법인인 丙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甲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정보를 통해 34조1항21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며 특히, 회피 목적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했다는 것을 통해 21호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함을 눈치껏 파악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겟된 판례를 잘 작성하신 후 그에 맞게 사안포섭하시는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으며 배점과 분량을 고려하여 단순히 '양 상표가 유사하다' 보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사안 포섭하신 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간혹 설문(2)가 설문(1)과 별도 문제라거나 설문(1)에서 문제되었던 34조1항 20호와 12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조건을 놓치신 분들이 계셨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 소결

판례 정리가 잘 되어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를 읽고 타겟된 판례를 찾아냈다면, 그 판례가 어떤 조항에서 실시되었는지 주소 설정을 해 보시는 것이 목차 잡기와 논점 파악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결론 내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를 많이 풀이하시면서 외관/칭호/관념 측면에서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지 스스로 체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이 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훈/4월/기초GS+/9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2는 甲과 乙사이에서 각자의 출원에 어떤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 특히 乙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판례를 타겟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甲과 乙의 상표는 어떠한지, 출원 시기는 어떠한지, 등록상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채점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1)은 ‘2026년 7월 1일’ 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판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설문에서 ‘2026년 7월 30일’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심결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7월 1일에는 여전히 인용상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乙은 甲과 ‘유사한 상표’ 를 ‘동일한 상품 a,b’ 와 ‘비유사한 상품 c’ 에 출원한 바, a, b 상품에 대해 法34조 1항 7호가 문제됩니다. 간혹 法35조의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문제 첫 줄에서 甲이 상표A를 ‘등록 받았기’ 때문에 34조1항7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으로 단순히 乙의 출원이 ‘거절된다’ 가 아니라, a,b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c’ 상품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이 내려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품을 구분하여 각각 판단을 달리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설문(2)는 ①甲과 ②乙의 예상 거절이유, ③乙의 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바에 따라 목차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누구의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인지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채점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읽고 묻는 바에 충실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甲과 乙의 예상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乙이 비유사한 상품 'c' 에 대해서도 출원하였기 때문에 설문(1)과 마찬가지로 상품 별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는 두문자를 활용하여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들을 작성하시면 큰 누락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조치 문제들의 경우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 너무 길게 쓰는 것 보다는 법조문을 활용하여 짧게 푼듯 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서술하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모두 GS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많은 분들께서 답안지 작성 실력이 오르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GS시즌에 돌입하고, 민사소송법 GS 및 사례 문제도 접하시면서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합격할 날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꾸준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

12

<문제-1> BANC.

I (원문)

1. 정차자 타당성 여부 (각각)

1)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 침해 여부.

상사권은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 권리를 침해하여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상사
권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된다.

(2) 사안의 경우.

상사권은 권리 행위에 따른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만을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상사권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타당하다.

2. 34조 1항 2호 권리 침해 여부 (각각)

1) 권리 침해

타인과 계약관계 등 선의관계에 따라 상표사용 중이나 사
유 침해 중임을 알면서 동일·유사 상표에 대하여 동일·유
사 상표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이는 선의관계 인정에
위반한 각의 출원을 허용하기 양기 위함이다.

(2) 타인과의 예외 (각각)

1) 권리자 판단 기준 - 후시제

권리자의 출원인과 권리관계 누가 상표를 사용한 권리자인가 판
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내역관계, 계약관



제정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 상품의 선택, 사용 방법, 상품 사용 등제하거나 상품을 선택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품질을 어느 관점에서 평가 할지라도 그를 신상품상품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무엇을 비권능성을 하기 위해 2.9, 2.4 이 두개를 사건의 의거 甲의 2이 채택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위판장 등 계약으로 해당 계약의 성립은 위판 계약이 해당 한다. 'BANC'라는 표시는 비권능의 명칭을 인정하는 것으로 2이 개수는 내기 신장 명칭을 인정하였지만 이로 한 甲의 등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은 제품 생산 과정 디자인 등 甲의 2이 甲에게 등록한 것과 동일성을 가진 인하여 甲에게 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면 甲이 2의 상품 등제하는 비권능의 품질을 관점에서 평가 볼 수 있다. 또한 甲이 이 사건 등명 'BANC'의 권리자이다.

3) 권리 - 권리인양(2.9)

甲이 상품의 권리자인 2이 출원인이 2이 권리 행사한다.

(가) 사용하거나 상품권능을 알았는지 여부(2.9)

2은 甲과 위판계약을 통해 甲이 2이에게 양한 인양기 2이에게 계약관계를 통해 상품 사용 권능을 안다.



(1) ~~특정~~ - 34조 1항 2단 7항 2단 7항 2단

은 甲의 계약관계를 통해 甲이 해당 상품을 비롯
기 사용 중일 언제나 필수 상품-상품이 불가능
때문에 24조 1항 2단 7항 2단 7항 2단

3. 34조 1항 2단 7항 2단 7항 2단 (23)

(1) 1. 34조

특정인의 출재로 인하여 상품이나 필수 상품 사용이 수
요를 기만할 영과 같은 상품은 유지 수 있다. 이는 단
기의 출재로 인하여 영과 같은 상품을 유지 수 있다.

(2) 타인인기 여부(23)

1) 타인인기 판정기준 - 7항 2단

양 당사자간 구체적이 내보 관계, 상품 사용하게 계약 등을 통해
사실 관계하에 선내상품과 선내 상품, 품격-영과 같은
관계로 그가 일정한 그를 선내상품 권리로 되어 있다.

2) 타인인기 판정

해당 상품은 201 제정의 판내-영과 같은 해로 특정인의
출재로 인하여 영과 같은, 단 201 이 이전 계약이 단
甲의 사용 시작 단 한 단 단 단
되어 있다.

3) 판정 - 타인인기(23)

선내상품 사용에 무인 출재로 201 제정시 타인인기.



(3) 두가 기관 영리 ~~변~~ (23)

같은 무역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경쟁한 상품이 출원되었기 때
문에 두가 기관 영리가 없다.

(4) 123

2의 출원은 342 1항 126 5항의 기재사항이 존재한다.

~~4 342 1항 126 2항 3항 4항 5항 6항~~

(1) 123. 456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50%의 신뢰를 보이기 위함이다.

(2) 123. 456

'BANU'는 향신료로 '비로'와 '오리' 관련 관계가 없는 상품
이기 때문에 '유비로'에 대한 SWISS 50%가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3) 123

2항 3항은 342 1항 126 2항의 기재사항이 없다.

4 567

~~342 1항 126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2항을 기재하여 50%의
비율로 342 1항 126 2항의 기재사항이 없기 342
1항 126 2항 3항 4항 5항 6항의 기재사항이 없다.

(3) 상표 등록 유사 여부

~~본 출원인 출원~~

1) 본 출원인 상표와 유사 여부 - 판례

본 출원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본 출원인 출원인
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2) 유사성의 판단

① 외관-인상 유사성

BONC 와 'BANC'의 관용이 알려져 있을 수 있는
관용을 비교할 수 있는 'BONC'는 두 가지 다른 상표의
이후에도 'BANC'로 쓰여지기 때문에 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② 발음-의미

BONC를 '뱅크'로 읽히는 'BANC'는 '뱅크'라는 원래
의미와 유사하며 'BONC'와 'BANC'를 알파벳만으로 비교
할 수 있는 'O'와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결과로서 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③ 시각-의미

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4) 결론

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출원인

도 바뀔 수 있다.

2. 상표권의 침해

(1) 부활개념(부호)의 침해 판정 기준

상표권 침해판정이 인정되려면 2가지 상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상품에
상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2) 상품 a, b.

상품 a, b는 동일 상품에 대한 1개 또는 2개의
상표권 침해판정을 받는다.

(3) 상품 c.

상품 c는 동일 상품에 대한 2개 또는 3개의
상표권 침해판정을 받은 상품 a, b에 대한
상표권 침해판정을 받는다.

(4) 결론

상품 a, b에 대한 1개 또는 2개의 상표권 침해판정
과 상품 c에 대한 1개 또는 2개의 상표권 침해판정
을 받는다.

II 예(2)

1. 甲 예상 - 24233호

(1)의 침해

상표권 침해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상표권 침해판정을 받는다.

특기 개인인 발명인 S가 S101 제1회 특허권 등록사 상품.
특기 특허권 등록사 등록번호 S가 S101

(1) 발명특허권 및 발명특허권 취득

상품 개질특허권 제4회 제1회 특허권 등록사 - 발명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S가 S101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2) 발명특허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3) 발명특허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2.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 제1회

(1) 특허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2) 특허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기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특허권 제1회



양쪽 당사자가 합의 조항 하에 합의 하였다고 있다.

(기) 결론

재판장은 당사자 합의 조항 하에 합의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있다.

2. Z의 권리

(1) 인양권 반환 청구 (제178조)

갑은 사채를 반환한 을로 인양권자에게 인양권을 반환할

조항 조항 조항을 구한다.

(2) 제181조 -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재판장은 합의 조항 하에 합의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조항 조항 조항을 구한다.

(3) 제182조 - 당사자 합의

갑은 을의 위법행위를 제181조 조항 조항 조항을

구한다.

(4) 제183조 - 상호 합의 조항

갑은 을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을에게 합의 조항 조항

을 구한다.

(5) 제184조 - 상호 합의 조항

갑은 을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을에게 합의 조항 조항

을 구한다.



[문제-1]

I. 문제(1)

1. 2종류의 상표가 한 번 해당 여부 - (44)

(1)의의 - (법34①(2))

동일·동등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권 취득한 상품·서비스의 일련성.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적용된 상표를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재판'의 판례 "甲"

1) 판례 - 판례방법

내용상표를 사용하여 궁극 목적을 큰 자가 유언을 계약의 성취나 내용, 개발·생성 상표를 구체화 하는 자가 유언 등을 중립적으로 고려 판례한다.

2) 사안

① 甲은 2사. '이벤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 '이벤트 계약'의 발생 상황이 기업계약에 해당 한다는 점

③ 2021.11.경 장리행사에기. 甲의 유언장의 목적을 중립적

행위가 발생한 'BANC'의 개발 내지 생성이. 2의 판례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두 '甲의 판례에 의거함'

④ 甲이 자행한 판례에 상응 하. '甲의 판례. 이 사건'

비교가 제조판매된 점

⑤ 2의 판례 '甲의 사용 목적이나 품질 관리하기 위한 판례'

을 바뀐 상태. '이 사건 표장의 ~~상징~~을 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이다."

(3) ~~甲과 乙의 계약관계 등 존재 여부 - (23)~~

甲과 乙은 '이 사건 계약'을 했다. 계약관계 등의 신의칙이
존재한다.

(4) 乙의 甲 사용·사용권을 알았는지 - (23)

甲의 재하에 乙이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한다. 甲의 사용에
대해 乙이 알았다고 판정한다.

(5) 甲의 ~~상표~~ 상표나 ~~표지~~ 표지·기타부 - (23)

甲의 '이 사건 표장'과 동등한 ~~표지~~ 표지를 乙이 출원한다.
甲의 직무인 유기질 비료 가공에 판매하는 가공차기 상표가
乙의 유기질 비료 생산 관련성에 관여하는 바 위법취내
상표. 시범과 할 수 있다.

(6) ~~명~~명.

乙의 출원에 대해 法 34①(2) 기필여유가 존재한다.

2. 乙의 출원이 34조 항목 1조 기필여유 ~~부족~~ - (23)

(1) 法 34조 ①(2) 전단 여부 - (17)

乙의 출원은 지정상품의 동일성의 평가에 따른다.
34①(2)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34①(12)권 해당부~~ - (12)

1)의

수요 기관 명칭이 있는 상표의 등록 불허한다.

주 ~~상표~~ 인보 취득 주제 - "甲"

2) 위임계약에 따라 ~~주~~의 ^{권한}이 사건 상표에 사용하였지만
특정인의 동의로 인허된 법률상의 주제는 2) 아닌
甲에게 귀속한다.

3) ~~상표~~ 사례

선 사용 상표의 개발, 변경 등에 관여한 자가 누구. 상표
주제라 한자가 누구지. ~~상표~~의 사용 금지하거나.
공통을 받은 자가 누구지 ~~결정~~ 판한다

4) ~~상표~~

대인의 ~~주~~의 ~~상표~~라 ~~동일~~ ~~상표~~를 ~~위임~~내 ~~상표~~ ~~출원~~
한 바. 수요가 기관 명칭이 존재한다

(3) ~~상표~~

2 ~~상표~~는 34①(12)에 해당한다

~~34①(12)권~~

(1) ~~상표~~ ~~주제~~ - (12)

개발유를 발견한 경우. ~~상표~~가 ~~출원~~에게 ~~개발~~을
출원 한 바 (사례) ~~결정~~ 판한다.

(1) 부채의 부담부 (부)

의 부는 법340(2). 법340(2)에 해당하든 부. 부채부으로 부담하다.

II. 부원(2).

5

1. 부원(2)의 의미.

조약상사제 등록된 상표가 될 위한 상표. 2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 각종 계약관계나 계약상 거래관계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어서가. 동일인이 상표의 지정 상표가 될. 유사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 불허한다.

2. 부원(2)을 출원으로 볼 수 있는가 - (부)

(1) 부원

출원시 발명할 수 있는 '기술어를 해결 목적으로.' 법안을 새롭게 발명한 후 자신의 명아 아닌 다른 법안자로 출원한 경우에도 34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치고 판했다.

(2) 부원

2. 두. 그의 등록을 받고. 그의 '유기부' 출원시 발명 가능한 기술어 해결 목적으로 부원을 출원한 후

丙 명의로 출원한 한바. 丙이 출원한 바와 같은
2의 출원번호 바 34①(2)를 인용할 수 있다.

3. 판

(1) 甲의 출원시 내용

甲이 "BONC"를 "유게리"로 출원한 내용을 밝혔다.

(2) 甲의 출원시 내용

丙이 '이전 판'을 '유게리'로 출원한 바와 같은 판을
출원한 사실에 출원했다.

(3) 계약관계에 관한

甲과 乙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4) 판

丙의 출원 34①(2)에 해당한다.

4. 판(2) 해명 - 내용 등류가.

丙출원 34①(2)에 해당한 바 등류가 불하다.

<출>



[문제-2]

4

I. 특허

1. 특허 개시 - (a.b)상품에 34①(n)

(1) 의의 - 34①(n)

상품에 관한 용어는 발명 개시에 대해
상품을 포함한다.

(2) 상품 a.b - 34①(n) 규정

상품에 관한 A' 상품을 상품의 지정상품 a.b와 같은
상품에 대해 동등한 34①(n) 하위한다.

(3) 상품 C - 34①(n) 해당

상품에 관한 C 상품은 A의 a.b 상품과 유사하다.
C 상품은 34①(n)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품 명칭 - 68조

(1) 원

개시어가 없다면, 상품을 명칭해야 한다.

(2) 원 - 부분개시 제도

특정 지정상품에 개시어가 존재하는 경우, 개시어를 한정해
상품을 한다.

3. 상품 개시 - 34①(n) 34②

개시어를 받쳐 개시어를 명칭하고 (34). 해당되지



앞다면 기결행은 한다.

4. 심판 결정

(1) 품 a.b. 기결행

2026. 7. 1. 기준 3 무의 심판 결정까지 앞뎌

340 (1)의 기결유로 기결행은 한다

(2) 품 C 등록

2026. 7. 1. 기준 C에 기결유가 되어 등록을 한다.

II 심판(2)

1. 출원인의 비상 기결유 - (법342 조)

(1) 법119 ①(3)에 해당할 것 - (20%)

무의 A상표를 3년간 유통 판매 이에 해당한다

(2) 심판청구 3번에 출원 - (20%)

2026. 3. 16^권에 심판이 청구가 되고 3번에인

2026. 6. 10에 A상표를 1회 대해 출원 했다.

(3) 유사행위 내 출원여부 - (20%)

상표상표가 등록된 상표를 등록 상품에 출원한다

(4) 무

무의 출원은 34③ 기결유가 존재한다.

